

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				
신청인	① 상호(성명)						
	② 연락처						
소유자 (실수요자)	③ 상호(성명)	④ 수입국	⑤ 수입 목적(용도)				
	⑥ 주소(시설 소재지) (연락처:)						
표본 정보	학명	부속서	형태	수량	용도	최종수출국	입수시기 및 지역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 환경청장 (지방환경청장)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·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·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